

의안번호	제 221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7월 1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
----------	-----

제출연월일 : 2019년 7월 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 장애등급제 폐지(7.1.)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대한 감면대상자 용어를 개정하고자 함
 - ※ 장애등급제(1~6급) 개정 내용
 - 장애등급 → 장애정도, 1~3급 → 심한 장애, 4~6급 → 심하지 않은 장애
 - 1~6급 → 등록장애인
- 지자체 시설이나 설비(영조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등은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고의·과실 및 의무 위반 등을 고려하여 배상책임を 지고, 그 밖의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르는 등 법률에 따라 배상함
 - 따라서, 자치법규에서 이를 규정하여 면책 또는 주민의 책임을 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특례를 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위반소지가 있어 동 조례안 제12조(면책)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도민 수여자 주차요금 감면규정 마련(안 제5조제1항제8호)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정(안 제5조제3항제1호나목)
- 손해배상 등의 책임 규정 개정(안 제11조제2항)
 - 기존) 도지사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 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개정) 도지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3. 의안전문 : 불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췌 : 불 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8호 중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을 “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및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 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을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도지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소재는 민법에 따른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p> <p>① (생략)</p> <p>1~7 (생략)</p> <p>8. <u>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차량</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생략)</p> <p>가. (생략)</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을 받은 사람</u></p> <p>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p> <p>① (생략)</p> <p>② <u>도지사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 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u></p>	<p>제5조(주차요금의 감면)</p> <p>① (현행과 같음)</p> <p>1~7 (현행과 같음)</p> <p>8. <u>충청북도 도민대상 수상자 및 충청북도 명예도민 수여자 차량</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u>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u></p> <p>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도지사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증명할 수 없는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는 민법에 따른다.</u></p>

현행	개정안
<p>제12조(면책) 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제13조제3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도난사고 등 5. 주차장 운영시간외의 무료 개방시간에 발생한 사고 및 차량의 훼손 또는 도난 등 	<p><u><삭제></u></p>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차장법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

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22.]

□ 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11조(손해배상 등의 책임) ① 이용자가 주차장 안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하고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의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지사 또는 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면책) 도지사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2.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3. 이용자 또는 이용자 간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4. 제13조제3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도난사고 등
5. 주차장 운영시간외의 무료개방시간에 발생한 사고 및 차량의 훼손 또는 도난 등